

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3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5-3조의 규정에 의한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이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공동학위”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③ “복수학위”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운영주체 및 협정체결) ① 제2조의 제1항의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은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(이하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.)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③ 협정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학위수여)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본교 학위수여규정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.

제6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

제7조(지원자격, 수학신청 및 허가, 등록 및 학점인정 등) ① 지원자격, 수학신청 및 허가, 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의 “국내·외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”에 따른다.

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신청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“국내·외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”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8조(수학기간)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하여 따로 정한다.

②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제9조(지원자격)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10조(지원시기, 수학허가 및 취소, 등록 및 수강료) 지원 및 수학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규정이나 협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, 본교 “국내·외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”에 따른다.

제11조(수학기간) 제8조를 준용하되, 동조 제1항의 규정내용 중 “외국대학”을 “본교”로 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